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22
----------	-----

제안이유

- 내용상 불부합한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골자

- 조문개정(다른 조례나 규칙에 → 다른 조례에)

첨 부

1.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다른 조례나 규칙에”를 “다른 조례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적용) ①(생략)</p> <p>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u>다른 조례나 규칙에</u>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p>	<p>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p> <p>..... <u>다른 조례에</u></p> <p>.....</p> <p>.....</p>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23
----------	-----

제안이유

- 직제개편에 따라 관직명칭이 변경되어 개정을 통한 현실화를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직제개편에 따라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개정

관련법규

- 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 제4조

첨 부

1.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생략)</p> <p>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p> <p>③-④</p>	<p>제2조(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행정부지사-----</p> <p>-----</p> <p>③-④(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충청북도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

제4조(부지사) 충청북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부지사

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2. 정무부지사

가.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나.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다.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라.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마.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바.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24
----------	-----

제안이유

- 조례제정의 목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자구 수정.

주요골자

- 제1조(목적)의 문구 수정보완

첨 부

-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용료에”를 “사용료 징수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자 계산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사용료 징수에.....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25
----------	-----

제안이유

- 조문의 취지상 불부합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제3조 제2항을 조문의 취지에 맞게 제2조로 정비 개정하고자 함.

첨 부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복무선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제3조(책임완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p>	<p>제2조(복무선서)....., 이 경우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p> <p>제3조(책임완수) ①(현행과 같음) (삭 제)</p>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26
----------	-----

제안이유

- 조례의 제명이 적절하지 못하여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개정

첨 부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지급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증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27
----------	-----

제안이유

- 대상의 수상부문을 세분화하여 분야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주요골자

- 현재 대상수상부문 8개 부문을 11개 부문으로 세분화
- 제3조 제2호의 문·예부문을 문학부문, 예술부문으로 동조 제4호의 교육·체육부문을 교육부문, 체육부문으로 동조 제8조의 산업·근로부문을 산업부문, 근로부문으로 분리개정

침 부

-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부문
2. 문학부문
3. 예술부문
4. 지역발전부문
5. 교육부문
6. 체육부문
7. 여성부문
8. 청소년부문
9. 농어민부문
10. 산업부문
11. 근로부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대상부문).....		
1.(생략)			
2. 문·예부문		1.(현행과 같음)		
3. 지역발전부문		2. 문학부문		
4. 교육·체육부문		3. 예술부문		
5. 여성부문		4. 지역발전부문		
6. 청소년부문		5. 교육부문		
7. 농어민부문		6. 체육부문		
8. 산업·근로부문		7. 여성부문		
		8. 청소년부문		
		9. 농어민부문		
		10. 산업부문		
		11. 근로부문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28
----------	-----

제안이유

- 조례의 내용상 불부합하는 내용수정으로 운용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조문개정(도지사가 따로 → 규칙으로)

첨 부

-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도지사가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29
----------	-----

제안이유

- 조례의 제명을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청 부

- 충청북도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정무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0
----------	-----

제안이유

-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주요골자

- 제3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기획부충북지부장”을 “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으로 변경함.

첨 부

-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충북지부장”을 “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협의회구성및운영) ①(생략)</p> <p>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p> <p>1-3. (생략)</p> <p>4. <u>국가안전기획부충북지부장</u></p> <p>5-14. (생략)</p> <p>③(생략)</p>	<p>제3조(협의회구성및운영)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u>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u></p> <p>5-14. (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1
----------	-----

제안이유

- 조례의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당초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장학금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그 자녀변경

첨 부

-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로서 재능이”를 “ 및 그 자녀로서 재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2
----------	-----

제안이유

-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중·고등학생까지로 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여 유능한 인재 양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제7조 제1항중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까지 포함시켜 개정하고자 함.

첨 부

-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풍장학회설치및육성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신입생 포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①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신입생 포함)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충청북도 도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신입생 포함)으로 한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3
----------	-----

제안이유

- 현 장학금지급조례의 장학금액은 '93년도에 정한 것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골자

- 제6조 장학금액을 현실에 맞게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

첨 부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규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학금액) 중 ·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60만원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액)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4
----------	-----

□ 제안이유

- 소방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과 법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주방설비, 보일러등 조문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최근 개정 공포한 소방법에 따라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 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10배 미만에서 20배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안 제9조제1항),
- 화재위험 경고 발령중 불의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위임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함.
- 조례로 정하여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사항과 법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 주방설비, 보일러등 10개 조문을 폐지하여 종전의 제6장 26개 조문을 제5장 16개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 소방법 제1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 소방법 제14조(소방의 날 제정·운영)
- 소방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단서, 제3항(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기준, 위치, 구조, 설비)
- 소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주택용,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시설의 기준)
- 소방법 제27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 소방법 제119조(과태료 부과)

□ 첨 부

-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법 제14조의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법 제15조제2항의 단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임시저장 및 취급의 기준과 이에 대한 위치·구조·설비, 법 제17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하여나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등의 저장취급기준과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2조(시간당 용량 3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열발생장치)시간당 용량 300,000킬로칼로리 이상의 열발생장치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실내에 설치하고 창 및 출입구 등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로의 주위에 유효한 공간을 보유하는 등 방화상 지장이 없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난로의 사용제한)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주점, 지하의 위생접객업소, 소극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 등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난로(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에 한한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난로에 받침대를 설치·고정시켜 쉽게 이동 또는 전도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 난로의 연소기(본체)와 연료통은 상호 5미터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연료통이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등) ①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등 안전책임자(이하 “안전책임자”라 한다)는 인화성 또는 폭발성의 물품 그 밖의 가연물의 부근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스나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2. 그라인더 등 불티가 생기는 작업
3. 토치램프 등에 의한 가열작업
4. 리베트작업

②안전책임자는 가연성의 증기, 가스, 분진 또는 폭발성의 분진을 현저하게 발생하는 물품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환기, 분진의 제거, 화기의 제한, 소화용구의 준비, 작업후의 점검 그 밖의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흡연 등) ①다음 각호의 장소로서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흡연 또는 불의 사용, 그 밖의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한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의 무대 또는 객석

- 2. “영”별표 1(특수장소)에 계기한 판매시설의 매장 또는 전시부분
-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위
- 4. 제1호 및 제2호에 계기하는 것 이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인명피해의 위험이 많은 장소

②제1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당해 장소에 흡연, 불의 사용 또는 화재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을 제지하여야 한다.

제6조(완구용 연화) ①장난감용의 폭죽·불꽃 등(이하 “연화”라 한다)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장난감용 연화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불연성의 용기에 넣거나 방염 처리된 것으로 피복 되어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을 피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의 날 행사) ①소방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행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소방행정에 관련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2. 불조심 강조의 달 설정과 홍보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있어서 11월 9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하고 행사의 성격상 기일을 요하는 사항은 필요한 날을 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3장 위험물의 취급

제8조(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취급 및 시설기준)①소방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취급상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은 충수압 시험을 받은 옥외탱크, 옥내 탱크 또는 지하탱크 저장시설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저장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 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를 제외한 탱크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위험물 저장소에는 백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택용 유류저장소”라는 명칭과 아래 부분에 품명 및 최대저장량을 기재한 표지판 및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엄금”이라고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되 표지판의 크기는 각각 가로 0.4미터 이상 세로 0.2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위험물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5. 압력탱크와의 저장탱크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 저장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지하탱크의 개폐밸브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은 금속관등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9. 저장탱크의 가까운 곳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옥내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세대별 난방용 옥내탱크는 제3항의 기준에 의한다.
1. 탱크전용실은 단층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기둥 등 돌출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탱크 상호간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탱크전용실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 및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단서의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탱크 전용실은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4. 탱크 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 전용실 출입구의 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탱크 전용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하게 경사를 지게하고 그 최저부에 저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세대별 난방용 위험물저장소는 제1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위험물 저장은 옥내탱크에 한하고 거실을 제외한 당해 세대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탱크의 최대 저장량은 1,000리터 이하로 하고 탱크 전용실은 다른 용도의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과 지붕으로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3. 탱크전용실의 출입구는 거실과 직접 통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고 방화문 및 0.2미터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하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저장 탱크는 지하에 설치된 탱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저장탱크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200조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시설에 적합할 때에는 당해 탱크를 탱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하저장 탱크는 그 윗부분이 지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3. 지하저장 탱크를 2개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지하저장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탱크와 탱크실의 내벽과의 사이는 0.1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탱크실 내부에는 건조된 모래로 채워야 한다.

제9조(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에 쓰이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난방시설에 쓰이는 지정수량 20배미만의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설비 및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제2항 내지 제10항과 같다.

②농예용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의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에 한한다.

③위험물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위험물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에 관한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 저장소에는 보기쉬운 곳에 위험물 저장소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50조(위험물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저장소에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 소화기를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이 조에서 “탱크”라 한다)는 압력탱크가 아니어야 한다.
4.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충수시험(물 이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우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지하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1제곱센티미터에 대하여 0.7킬로그램으로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탱크의 외면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6. 탱크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통기관의 위쪽 끝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도 이상 구부러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가는 눈의 구리로 된 인화방지망을 씌워야 한다.
 - 다. 통기관의 윗쪽 끝은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미터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하되,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의 높이어야 한다.
 7.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이 자동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계량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의 주입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가. 화재예방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급유호스 또는 급유관과 결합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다.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9. 배관은 강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금속성의 것으로 설치하되 외면에는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칠을 하여야 한다.
- ⑤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옥내저장소는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48조(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옥내저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저장창고의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나. 저장창고의 출입구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옥내저장소의 주위에는 공지를 두되, 공지의 너비는 지정수량의 5배미

만인 경우에는 0.5미터이상, 지정수량의 5배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69조(옥내저장소 건축물의 구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8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옥외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 설치장소 및 보유공지에 관한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227조(옥외 저장소의 설치장소), 제228조(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구조는 이 조 제8조제2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⑧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 안전거리, 보유공지, 방유제에 관한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48조, 제176조, 제190조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⑨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탱크의 위치, 매설배관, 탱크와 탱크실이 벽 및 탱크 상호간의 거리 등은 제8조제4항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⑩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기준은 이 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험물 임시저장, 취급기준) ①법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5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대상은 공사장, 수출입 화물의 하역장소 등과 같이 임시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2. 저장시설은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로 한다.
3. 옥외저장소에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은 소방시설기준규칙 별표 16의 운반용기와 수납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저장시설 주위에는 3미터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고 높이 1.5미터 이상의 방화벽 또는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위험물 저장 취급시설 주위에는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50조(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에 규정한 표지 및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이상의 소화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③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저장 취급시설의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량위험물취급소”라는 표지와 위험물의 품명과 최대수량 및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따라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설비는 온도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물을 가압 또는 취급에 따라 압력이 상승하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인화성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열매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하고,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증기를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전기설비는 전기공작물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7.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금속관 그밖의 내열성을 가진 관을 사용하고 그 배관 외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온도, 압력 및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위험물의 변질 또는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위험물이 남아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할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시킨 후 안전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12. 가연성의 액체, 증기, 가스가 새거나 남아있을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작은 가루가 떠돌아다닐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이어야 하고 불티가 생기는 기계기구나 공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 중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접촉 또는 혼합으로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과 위험물 이외의 물품은 상호 근접하여 뒤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 또는 혼합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위험물을 용기에 담거나 옮겨 쌓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기술기준규칙 별표16에 계기한 운반용기와 수납방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위험물을 담은 용기가 겹쳐서 저장할 경우에는 높이 3미터(제4류 위험물중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수납한 용기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4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7.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할 때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골고루 상승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18. 위험물을 옮겨 쌓는 작업은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19. 분무, 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 20.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1. 염색 또는 세탁 작업시에는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잘 되게 하고 폐유는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22. 버너로 위험물을 소비할 때에는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쳐흐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3.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비치할 것.

②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장소의 주위에는 폭 2미터 이상(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방화구조의 벽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마주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닥 주위에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고, 당해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가장 낮은 부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가대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대를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높이 6미터를 초과하여 용기를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1. 벽, 기둥, 바닥 및 천정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2.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가장 낮은 부분에 저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가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대를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5.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채광, 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증기 또는 작은 가루의 발생이 많은 경우에는 당해 증기 등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금속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고 쉽게 파손 또는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면에는 쉽게 녹이 슬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안전장치를,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인화의 우려가 있는 위험물의 저장,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통기관의 선단에 구리로 된 가는망을 씌워 인화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기 쉬운 위치에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입구는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탱크의 배관에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액체위험물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새는 경우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옥외에 설치한 것으로 탱크 밑판을 바닥에 접하여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지하탱크의 기술상 기준은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지반면 밑에 콘크리트로 만든 탱크 실에 설치하거나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프라이마, 몰탈 등으로 피복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등에 의해 상부에서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탱크는 당해 탱크에 직접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뚜껑을 덮어야 한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탱크배관은 당해 탱크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6. 탱크 주의에는 당해 탱크에서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할 수 있는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특수가연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특수가연물(영 별표4에서 정한 특수가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및 최대수량, 화기취급금지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특수가연물을 쌓아두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50제곱미터 이하마다 높이 9미터이하로 구분하여 쌓고, 상호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마다 구분해서 쌓을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3조(화재라고 오인할만한 연기를 발하는 행위등의 신고) 다음 각호에 게기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서장에게 신고(구술 또는 전화)하여야 한다.

1. 약제 및 화학제품 등을 사용하여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 또는 화재를 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연화(완구용 연화는 제외한다)의 취급 및 사용
3. 수도의 단수 또는 감수

제14조(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명령)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조 및 8조의 사항은 1차에 한하여 시정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15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벌 칙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전 조례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중전의 화재예방조례 제22조(화재위험경보 발령중의 불의 사용제한)의 규정은 소방법령이 정하는 관련 규정의 폐지 시행일인 1999. 8월 6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근거 법령

제13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보일러·난로·화로·건조설비·전기시설 그 밖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지켜야 할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소방의 날 제정·운영) ①시·도는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불조심에 관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의 날 제정과 그 날에 있어서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180일(공사장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 저장 또는 취급장소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소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기준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제조소등의 시설기준등) ①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기준(이하 이 장에서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의 완공검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위하여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위험물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대한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④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절차·방법 및 수수료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시험대상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소량위험물의 취급) ①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동탱크저장시설에 저장·취급하는 것을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 및 시설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제15조제1항 단서·제16조제3항·제18조제1항 후단·제19조제3항(제35조 및 제65조의 7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3조 제1항 후단·제57조·제62조제1항 또는 제6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자체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사람
3.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4.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5.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소방용수·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제13조,제15조제2항 단서·제3항,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

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⑦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이를 준용한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5
----------	-----

제안이유

- 복지시설의 주소변동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제2조중 “산55-24번지”를 “산751-1번지”로 개정
- 별표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준함”을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준함”으로 개정

첨 부

-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55-24번지”를 “산751-1번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① 복지관은 충주시 호암동 산55-24번지에 둔다 ②(생략)		제2조(위치) ①	산75-1번지..... ②(현행과 같음)

<별표>

복지시설이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생활보호대상자	일 반	
물리치료 (언어, 심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하는 의료보험진료 수가 및 약가	장애복지법 제48조 및 동법시 행령 제38조에 준함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 료	20,000원	
수 영 장	1회 2시간	"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월 회 원	"		
기 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6
----------	-----

제안이유

- 회관의 주소변경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제2조중 “554-6번지”를 “554-58번지”로 개정
- 상위법개정에 따른 이용대상연령 개정 (65세 이상 → 60세 이상)
- 직영과 위탁운영 규정의 내용 및 용어정리

첨 부

-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554-6번지”를 “554-58번지”로 한다.

제4조중 “65세 이상”을 “60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관리)노인복지회관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 관리하되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노인복지회관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6번지에 둔다</p> <p>제4조(이용대상 및 사용료) ①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은 충청북도내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강당등 일부 시설은 일반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조(위치)554-58번지.....</p> <p>제4조(이용대상 및 사용료) ①.....60세이상.....</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운영관리) ① 노인복지회관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관장은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한다.</p> <p>②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토록 할 수 있다.</p>	<p>제6조(운영관리) 노인복지회관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되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토록 할 수 있다.</p>	

관계법령발췌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

제24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충청북도노인맞이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7
----------	-----

제안이유

- 조례의 내용에 일치하도록 수정보완 하고자 함.

주요골자

- 문구수정 보완 (내용중 “노인”을 삽입)

첨 부

- 충청북도노인맞이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치매질환”을 “노인 및 치매질환자”로, “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을 “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으로 한다.

제3조 제3호중 “치매환자”를 “노인 및 치매환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치매질환</u>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u>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u>(이하 “치매요양병원”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노인 및 치매질환자.....<u>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u>.....</p>
<p>제3조(업무) 치매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2. (생략) 3. 기타 <u>치매환자</u>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p>	<p>제3조(업무) 1.-2 (현행과 같음) 3. 노인 및 치매환자.....</p>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8
----------	-----

제안이유

- 중복 또는 유사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제30조 삭제

첨 부

-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p> <p>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등에 관</p> <p>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삭	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39
----------	-----

제안이유

-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영에 효율을 꾀하고,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주요골자

- 자구 수정 (도지사 → 충청북도지사, 도의회의원 → 충청북도의회의원)
- 제8조제3항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변경

첨 부

-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중 “도의회 의원”을 “충청북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3조(기능) ①(생략)</p> <p>②위원회는 <u>도지사</u>가 결정·관리하는 요 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③(생략)</p>	<p>제3조(기능) ①(현행과 같음)</p> <p>② <u>충청북도지사</u></p> <p>③(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구성)</p> <p>①-②(생략)</p> <p>③위원은 <u>도의 경제통상국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 인, 도의회 의원, 소비자·근로자·여성 대표중에서</u>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④(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u>충청북도의회의원</u>.....</p> <p>④(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구성)①-②(생략)</p> <p>③의결은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u> 한다.</p> <p>④-⑤(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①-②(현행과 같음)</p> <p>③회의는 <u>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u> 의결 한다.</p> <p>④-⑤(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0
----------	-----

제안이유

- 정부 및 도의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부서와 직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조례가 일치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골자

- 기구개편에 따른 관직명칭 개정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통상산업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행정부지사→경제통상국장)
- 정의중 “연쇄화사업”을 “체인사업”으로 하고 “연쇄화사업자”를 “체인사업자”로 하며, “도·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
- 용자심의위원회위원중 “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위원 1인,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임직원, 도기업지원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개정
- 사후관리중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개정

첨 부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하고, 동조 제8호중 “연쇄화사업자”를 “체인사업자”로 하며, “도·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연쇄화사업”을 “체인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9호중 “도·소매진흥법 제26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46조”로 하고, 동조 11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6호중 “연쇄화사업자”를 “체인사업자”로 한다.

제9조 제2호중 “도·소매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연쇄화”를 “체인”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사업담당국장”을 “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
4. 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
5.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6. 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임직원
7. 도기업지원과장
8.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15조 제1항중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제13조(유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는 (생략) ③ 위원장은 <u>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담당국장이 된다.</u>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로 한다. 1. 충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장 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 4. 산업기술정보원 충북지역정보센터소장 5. 상공회의소회장 1인 6.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p> <p>⑤ (생략)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15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 자금의 관리실태를 <u>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17조(결산 및 보고)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u>도의회 및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3조(유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②(현행과 같음) ③.....<u>경제통상국장</u> 부위원장은 <u>충북신용보증조합이사장이 된다.</u> ④..... 1. <u>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u> 2. <u>중소기업진흥공단충북지역본부장</u> 3. <u>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u> 4. <u>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u> 5. <u>상공회의소 사무국장</u> 6. <u>기금취급은행장이 추천한 소속임직원</u> 7. <u>도기업지원과장</u> 8.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p> <p>⑤(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후관리) ①<u>조사할 수 있다.</u></p> <p>제17조(결산 및 보고) ②<u>산업자원부장관</u>..... </p>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1
----------	-----

□ 제안이유

- 제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삭제로 민원인 편의제공 등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제명변경(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 법령 용어·정비 및 규제완화 (면제할 수 있다 → 면제한다)
- 민원인의 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조항 삭제

□ 첨 부

-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중 “시험조사”를 “시험·조사”로 한다.

제5조중 “별표1에 의거”를 “별표1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중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부공문서 규정”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15일”을 “1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과 이에 따른 수수료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p> <p>.....</p> <p style="text-align: center;">..... 시험 · 조사</p> <p>.....</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내수면 양식대상 어종에 따른 적지 여부와 수산용수로서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시험 · 조사.....</p> <p>.....</p> <p style="text-align: center;">..... 시험 · 조사</p> <p>.....</p>	<p>제5조(수수료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거 수수료를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첨부하여야 한다.</p>	<p>제5조(수수료정수) 별표1에 의한</p> <p>.....</p>	<p>제6조(수수료의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새마을 양식계에서 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시험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6조(수수료의 면제)</p> <p>.....</p> <p style="text-align: right;">..... 면제한다.</p>	<p>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 시험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은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 제3호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출장공무원의 여비(이하“여비”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p> <p>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새마을 양식계에서 양식어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의뢰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0조(처리절차) 이 조례에 관한 업무처리는 별표3의 절차에 의하여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처리절차).....</p> <p>.....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p> <p>.....</p>	<p>제11조(결과의 통지) ①장장은 시험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장 적지조사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별지2호 서식에 의한다.</p> <p>②(생략)</p>	<p>제11조(결과의 통지) ① 10일.....</p> <p>.....</p> <p>②(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순환수립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2
----------	-----

제안이유

- 상위법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삭제와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관직 정비등 조례목적과 일치하도록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관직명칭 개정(산림청장 → 환경부장관)
-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제조항 삭제(제8조, 제11조, 제14조)
- 법개정으로 신고의무기간 완화(3일 → 7일)
- 자구수정(포획승인증 → 포획승인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 종전의 22개 조문을 18개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함.

관련법규

- 조수보호및수립에관한법률 제13조

□ 첨 부

-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충청북도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수렵장의 명칭은 충청북도순환수렵장 (이하“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순환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렵금지 구역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사무소) 도지사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시·군·출장소·구청, 읍·면·동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수포획 승인등) ①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시장·군수·증평출장소장의 수렵조수포획(이하“포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

호 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수렵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②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

제7조(수렵금지구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2.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도시공원
4. 문화재보호구역
5.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군사시설 보호구역
7. 도시계획구역
8. 관광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
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구역
10.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출장소장이 조수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8조(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②포획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서 하는 총렵

제9조(포획조수의 신고) ①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에 포획한 조수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승인일로부터 7일마다 수렵장에서 가까운 시·군·출장소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시장·군수·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조수에 조수보호 및수렵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0조(포획승인등의 취소) ①시장·군수·출장소장은 수렵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및 시·군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장 소지자에 대하여 포획승인을 취소한 경우 면허장 발급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 각호의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가능 조수 이외의 조수를 포획하였거

나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렵안내 등) ①시장·군수·출장소장은 주로 외국인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임무·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건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안내료 및 엽건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조수보호원의 배치) 시장·군수·출장소장은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조수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입렵자 및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시설물의 설치) ①도지사는 조수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①시장·군수·출장소장이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의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와 시장·군수·출장소장은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출장소장은 제한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출장소장은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업무대행 등) ①도지사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수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조수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 및 수렵조수 포획승인서 교부·회수
2. 동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신고 및 포획조수 확인표시
3. 수렵안내원 관리
4. 기타 도지사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수렵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북도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수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렵지도 단속등)①시장·군수·출장소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를 지도·단속토록 하여야 하며, 수렵면허장 및 포획승인서 소지 여부와 포획한 조수 및 그 알·집·박제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의한 수렵금지구역내에서의 수렵행위
2. 제8조,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3. 기타 불법행위

②수렵지도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수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및 조수보호및수렵 등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렵조수포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포획장소				
⑤ 조수별포획예정량			⑥ 포획기간	
⑦ 총기의 종류			⑧ 수렵장사용료	원
<p>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의 수렵조수를 포획코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날인 또는 무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p>1. 면허장 사본 1부.</p> <p>2. 보험가입증명서류사본 1부.</p>				없음

[별지 제 2 호 서식]

(앞 면)

제 호 수 렷 조 수 포 획 승 인 서			
승인연은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승 인 사 항	③포획기간		
	④포획지역	⑤조수별포획예정량	
	⑥수렵면허장번호	⑦총기의 종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렵조수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			
< 준 수 사 항 >			
1. 조수를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장과 같이 이 승인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지역·조수별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며 그 포획물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폭발물·극약·독약·땃·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지 못합니다.			
4.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5.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증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6. 포획물 미신고시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사유가 됩니다.			

(뒷 면)

포 획 조 수 신 고 내 역							
연월일	조수명	수 량	포획장소 (군·면)	연월일	조수명	수 량	포획장소 (군·면)

관 계 법 령 발 취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제13조(수렵장)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수의 보호·번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이 법 또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수렵장 밖에서는 수렵조수를 포획하지 못한다
- ③수렵장안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조수를 포획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한 조수의 종류, 포획수량등에 관하여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수렵장설정자는 수렵장안에 수렵에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위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수렵장 사용료등 수입은 수렵장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보호관련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중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⑦수렵장안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⑧수렵장설정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운영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조수 포획승인신청을 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렵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3
----------	-----

제안이유

-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시설사용요금 내용을 삭제하여 시설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자구 수정(국민학교→초등학교, 방위병→공익근무요원)
-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휴양림 내의 숲속의 집 또는 임간 수련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
- 시설사용요금표 개정

첨 부

-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제2호중 “방위병”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한다.

제7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휴양림내의 숲속의 집 또는 임간수련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

제9조중 “충청북도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세입”을 “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 설 사 용 요 금 표

(단위:원)

시설명	구 분	사용기간	요 금	비 고
숲속의 집	· 4인용	1동/1일	30,000	
	· 5인~8인용		40,000	
캠 프		1회사용	20,000	앰프시설 포함
화이어장 오토캠프장		개소/1일	4,000	주차 및 야영 7~8 인용 텐트1조
야 영 장		개소/1일	2,000	야영 7~8인용 텐트 1조
평 상	· 소 형 (2평 미만)	개소/1일	1,000	
	· 대 형 (2평 이상)	개소/1일	2,000	
사 계 절 썰 매 장	· 어린이		3,000	썰매 대여포함
	· 청소년·군 인·일반		4,000	
			5,000	
단체숙소 샤 워 장		1동/1일	100,000	※징수방법은 자진납부 함을 설치하여 납부
	· 어 른	1회사용	500	
	· 학 생		3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국민학교 학생)를 말한다.</p> <p>2. 청소년 및 군인 : 13세이상 20세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u>방위병</u>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 - 6 (생략)</p> <p>제7조(입장료등의 면제)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9 (생략) <u><신설></u></p> <p>제9조 도유림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u>충청북도공유임야관리를 특별회계세입</u>으로 하며, 시·군유림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는 시·군 세입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p> <p>1.<u>초등학교</u>.....</p> <p>.....</p> <p>2.<u>공익근무요원</u>.....</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7조(입장료등의 면제)</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휴양림내의 숲속의 집 또는 임간수련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u></p> <p>제9조</p> <p>.....<u>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u>.....</p> <p>.....</p> <p>.....</p> <p>.....</p>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4
----------	-----

제안이유

- 자구수정과 관직을 정리하여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

주요골자

- 자구 수정(진흥을 위한 사업 또한 활동이나 →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 관직 정리(문화관광국장 → 문화진흥국장)

첨 부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업 또는 활동이나”를 “사업이나 활동 및”으로 한다.

제8조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진흥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사 업이나 활동 및 </p>	<p>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p>	<p>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문화진 흥국장 </p>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5
----------	-----

제안이유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오기된 조문을 정리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부위원장의 직명 개정 (문화진흥국장 → 건설교통국장)
(문화체육과장 → 지역개발과장)
- 자구 수정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 1의”로 개정

관련법규

-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첨 부

-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문화진흥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각호의”를 “각호의 1의”로 하며, 동항 제4호중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지역개발과장이 되며 서기는 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측량법 】

제58조(지명위원회) ①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지명위원회를,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둔다.

②시·도지명위원회는 시·군·구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지명을 심의·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지명위원회는 시·도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결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명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지명위원회 및 시·군·구지명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측량법 시행령 】

제35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시·군·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이상으로 하고, 시·군·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6
----------	-----

제안이유

- 상위법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
(문화재보호법 제26조 제2호 및 제26조 폐지)

주요골자

- 상위법의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 (제28호, 제37호 삭제)

첨 부

-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8조(허가사항)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생략)</p> <p>2. <u>규칙이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 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행위</u></p> <p>3.-4. (생략)</p>	<p>제28조(허가사항).....</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 (삭 제)</p> <p>3.-4.(현행과 같음)</p>
<p>제37조(양도제한)①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매도하고 할 경우에는 <u>도에서 매입을 원할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u></p> <p>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매입할 수 있다.</p>	<p>(삭 제)</p>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7
----------	-----

제안이유

- 조문 및 내용 정리를 통하여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관직 및 자구수정 (부지사 → 행정부지사, 다음 각호의 → 다음 각호의 1의)
- 단서조항 삭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첨 부

-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향토음식기능보유자지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7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8호제1항중 “각호의”를 “각호의 1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4조(구성)①(생략)</p> <p>②위원장은 충청북도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p> <p>③(생략)</p>	<p>제4조(구성)①(현행과 같음)</p> <p>②..... 행정부지사.....</p> <p>③(현행과 같음)</p>
<p>제7조(의결정족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제7조(의결정족수).....</p> <p>.....</p> <p>(단서삭제)</p>
<p>제8조(위원의 해촉)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3. (생략)</p>	<p>제8조(위원의해촉)①.....</p> <p>..... 각호의1의.....</p> <p>.....</p> <p>1.-3.(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8
----------	-----

제안이유

- '99. 1. 1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적용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조문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제2조 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 주민편의를 위한 도달주의 채택(제4조 제1항)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첨 부

-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체육시설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중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를 “그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자로 한다.</p> <p>1. 법 제12조 단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p> <p>2.-4.(생략)</p> <p>5.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6.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p> <p>7.-8. (생략)</p> <p>9.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p>	<p>제2조(부과대상).....</p> <p>(삭 제)</p> <p>2.-4.(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7.-8.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제4조(이의신청)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생략)</p>	<p>제4조(이의신청)①.....</p> <p>.....그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p> <p>.....</p> <p>②(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4조(관계법령)

第44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18>

1. 削除<99·1·18>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 2의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3.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體育指導者를 配置하지 아니하거나 體育指導者資格이 없는 者를 配置한 者
4.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者
5. 및 6. 삭제<99·1·18>
7.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第42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業種의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者
8.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閉鎖命令 또는 停止命令을 받고 第42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觀光部令이 정하는 小規模營業의 體育施設業의 營業을 한 者
9. 削除<99·1·1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9·1·1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99·1·1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99·1·18>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 1 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大衆골프場 竝設에 관한 經過措置 및 適用時限) ①이 法 施行당시 大衆골프場을 직접 竝設하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하기로 하고 會員을 모집하는 골프場業에 대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大衆골프場을 직접 竝設하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하여야 하며, 大衆골프場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한 때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衆골프場을 병설하거나 大衆골프場造成費를 預置한 것으로 본다.

②第14條 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5年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衆골프場 竝設義務 또는 大衆골프場造成費 預置業務가 賦課된 者는 同 期限이후에도 그 義務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35條第2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하여 行政處分할 수 있다.<99·1·18>

第 3 條 (體育施設業의 명칭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정구場業 또는 미용體操場業의 申告를 한 者는 第1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테니스場業 또는 에어로빅場業 으로 각각 申告한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49
----------	-----

제안이유

- 자구 및 직명 수정을 통하여 조례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 자구 수정 (각호의 → 각호의 1의)
- 직명 변경 (중등교육장 → 교육국장)

첨 부

-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중등교육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0호중 “각호의”를 “각호의 1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
<p>제2조(위원회 구성)①-②(생략)</p> <p>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u>중등교육장</u>, 충청북도지방경찰청방범과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단체장, 교육장,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제2조(위원회 구성)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u>교육국장</u>.....</p> <p>.....</p> <p>.....</p> <p>.....</p>	<p>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실무위원회에 서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조정 심의한다.</p> <p>1.-4.(생략)</p>	<p>제10조(실무위원회의기능).....</p> <p><u>각호</u>의1의.....</p> <p>.....</p> <p>1.-4.(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0
----------	-----

제안이유

-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내용 정리와 조례내용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35조

첨 부

-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관광진흥법에 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을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p>

관 계 법 령 발 취

[관광진흥법]

第35條第1項(課徵金の賦課)①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觀光事業者가 第33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萬원이하의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を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の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관할 登錄機關등의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を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1
----------	-----

제안이유

- 내용에 맞게 자구 및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을 꾀하기 위함.

주요골자

- 자구 수정 (도 심의회 → 심의회)
- 중복된 조문 수정(제7조의2제3호, 동조제4호)

첨 부

-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규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제6조중 “도 심의회”를 “심의회”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지방조사연구단에는 각 분야별 계획의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목적) ①도심의회는 회장 1명과 16명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군건설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는 위원정수에 불구하고 위원이 된다.</p> <p>② - ④ (생략)</p>	<p>제2조(목적)①심의회.....</p> <p>.....</p> <p>.....</p> <p>.....</p> <p>.....</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회의 및 소집) 도심의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조(회의 및 소집)심의회.....</p> <p>.....</p> <p>.....</p>
<p>제6조(의사정족수) 도심의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p>	<p>제6조(의사정족수)심의회.....</p> <p>.....</p> <p>.....</p>
<p>제7조의2(지방조사연구단) ①-②(생략)</p> <p>③지방조사연구단에는 각 분야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서 단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p> <p>④-⑥(생략)</p>	<p>제7조의2(지방조사연구단)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지방조사연구단에는 각 분야별 계획의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둔다.</p> <p>④-⑥(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2
----------	-----

제안이유

- 조례의 내용에 맞게 자구 및 직명을 수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직명 개정 (부지사 → 행정부지사)
- 자구 수정 (위원장의 명을 → 위원장 및 관계국장의 명을)

첨 부

-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제18조중 “위원장의”를 “위원장 및 관계국장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6조(구성) ① (현행과같음).....</p> <p>②.....행정부지사.....</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자료제출요구등)①단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p>	<p>제18조(자료제출요구등)①.....</p> <p>.....위원장 및 관계국장의.....</p> <p>.....</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3
----------	-----

제안이유

-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제6조제2항중 “위원장을 포함하여”를 삭제
- 모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내용적용 자구 수정
(제10조제3호, 제4호)

첨 부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위원장을 포함하여”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호중 “제80조제2항의”를 “제80조제1항 본문”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6조(회의) ①(생략)</p> <p>②회의는 <u>위원장을 포함하여</u>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회의) ①(현행과 같음)</p> <p>② 회의는 <u>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u>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p> <p>1 - 2(생략)</p> <p>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p> <p>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제85조제5항,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p>	<p>제10조(심의범위) -----</p> <p>-----</p> <p>-----</p> <p>-----</p> <p>1. - 2.(현행과 같음)</p> <p>3. -----</p> <p>----- 제80조제1항 본문의 -----</p> <p>-----</p> <p>4. -----</p> <p>----- 제79조제2항 본문 -----</p> <p>-----</p> <p>-----</p>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4
----------	-----

□ 제안이유

- '99. 2. 9 건축법이 개정되고 '99. 4. 30 동법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정비
 -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설치기준 관련조문 정비(안 제3조)
 - 건축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5조 제3항
 - 건축법 제4조 제5항 및 영제5조제4항
 - 건축분쟁 제외 대상 관련조문 정비(안 제16조)
 - 건설업법 제3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일부 불합리한 내용 개선·보완
 - “소속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법령 용어 사용(안 제4조, 제8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 “재적위원 관련 조문” 정비 (안 제9조, 제22조)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정비(안 제10조)

□ 첨 부

-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관련법규 발췌 1부

충청북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3조, 제18조제3항, 제25조중 “소속공무원”과 제20조중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조중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안의 심의”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한다”로 한다.

제16조중 “건설산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제2항중 “건축관계공무원”을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제2항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 각호의 1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3조(설치)법 제4조제2항 및 영제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설치)-----제5항 ----- -제4항의 ----- -----</p>
<p>제4조(구성) ① - ② (생략) ③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u>소속공무원</u> 및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4조(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소속직원</u> ----- ----- -----</p>
<p>제5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축조례의 제개정에관한사항</u> 2. <u>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u> 3. <u>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u> 4. <u>법 제62조의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u> 5. 기타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도록 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p>제5조(기능)----- ----- 1.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2. <u>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u> 3. (현행 제5호와 같음)</p>

현행	개정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p> <p>②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과 소속 건축관계공무원이 된다.</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현행과 같음)</p> <p>②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과 소속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p>
<p>제9조(회의) ① - ② (생략)</p> <p>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p>	<p>제9조(회의)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소위원회) ① 생략</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③ - ⑤ 생략</p>	<p>제10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 호선한다.</p> <p>③ - ⑤(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직원</p> <p>-----</p> <p>-----</p> <p>-----</p>

현행	개정
<p>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p> <p>제16조(설치) 법 제76조의2 및 시행령제1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건설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한다)를 둔다</p> <p>제18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으로써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 4.(생략)</p> <p>제20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21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도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과 소속의 <u>건축관계공무원</u>이 된다.</p>	<p>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p> <p>제16조(설치) -----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p> <p>제18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도 <u>소속 직원</u>으로써 ----- ----- 1. - 4.(현행과 같음)</p> <p>제20조(임기) 소속직원----- ----- -----</p> <p>제21조(간사 및 서기) ①(현행과 같음) ② -----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p>

현행	개정
<p>제22조(조정위원회 회의) ① - ③ (생략) ④ <u>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u></p>	<p>제22조(조정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u></p>
<p>제24조(비용부담) ① (생략) ② <u>법 제76조의7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 3. (생략) ③ (생략)</p>	<p>제24조(비용부담) ①(현행과 같음) ② ----- ----- ---다음 각호의 1과 --- ----- ----- 1. - 3.(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수당과여비) 도 소속공무원 <u>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25조(수당과여비) 도 소속직원 ----- ----- ----- -----</p>

관계 법령 발췌

■ 건축법

개정 전	개정 후
<p><u>제4조 (건축위원회)</u>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 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u>제4조 (건축위원회)</u> ① 건설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②·③·④ 생략</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한다</p>
<p><u>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u> ①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u>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u> ①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p>제5조(건축위원회) ①·② 생략</p> <p>③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 7.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9. 삭제 	<p>제5조(건축위원회) ①·②·③(신설)생략</p> <p>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법 제62조·법62조의2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심의 7. 삭제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9. 삭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청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5
----------	-----

제안이유

- 중앙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학생 및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휴관일을 현행 주1회 월요일과 공휴일 휴관에서 월2회 월요일 휴관으로 하고자 함.

주요골자

- 중앙도서관 휴관일 개정
(주1회 월요일 →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첨 부

-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1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p> <p>1. 월요일 2. (생략) ② (생략)</p>	<p>제13조(휴관일) ① ----- ----- ----- ----- -----</p> <p>1.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6
----------	-----

제안이유

- 용어정비를 통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용어정비(교육감이 정한다 →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첨 부

-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교육감이”을 “교육규칙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9조(시행규칙)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교육감이</u>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 ----- ----- <u>교육규칙으로</u>-----</p>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7
----------	-----

제안이유

- 용어정비를 통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용어정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첨 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교육감이 따로”를 “교육규칙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교육감이</u> 따로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 -----<u>교육규칙으로</u> -----</p>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8
----------	-----

제안이유

- 용어정비를 통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을 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용어정비(교육감이 정한다 →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세칙 → 시행규칙)

참 부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교육감이”를 “교육규칙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교육감이</u>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 -----<u>교육규칙으로</u> -----</p>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59
----------	-----

□ 제안이유

- 고용직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90년도 이전에는 현업부서에서 단순한 노무에 주로 종사해 왔으나, 그 기능이 쇠퇴하고 '92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규채용 발생의 여지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것임.

□ 주요골자

- '92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의 정·현원이 한명도 없고 앞으로도 신규 채용 발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동조례 폐지

□ 첨 부

-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60
----------	-----

제안이유

- 행정서사법의 개정(1995. 1. 5 법률제4874호 전문개정)으로 조례로 정하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한행정사회가 정하도록 하였으나 1999. 5. 25 수수료 관련조항 폐지에 따라 조례의 존치의의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함.

주요골자

- 상위법인 행정사법의 전문개정과 수수료 관련 조항(제19조) 폐지로 행정사의 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동조례폐지

첨 부

- 충청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중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61
----------	-----

제안이유

- 공업단지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로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및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96. 6. 28일 제정 조례로서 공업단지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로 조례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동조례 폐지

첨 부

- 충청북도중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62
----------	-----

제안이유

-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굳이 조례가 없어도 아동위원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이 전무하여 존치의의가 없는 조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기 위하여 '62. 8. 7일 제정된 조례로서 최근 3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동조례폐지

첨 부

-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충청북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63
----------	-----

제안이유

- 협의회 설치이후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91. 10. 26일 제정된 조례로 협의회 설치이후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동조례폐지

첨부

-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64
----------	-----

□ 제안이유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존치의의가 없는 조례로서 폐지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이 조례는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가격등의 표시에 관한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5. 8. 11일 제정되었으나 '99. 1. 15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군에 위임되었으므로 동조례 폐지

□ 첨 부

-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가격등의표시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폐지조례(안)

발의년월일 : '99. 7.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의안 번호	165
----------	-----

제안이유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중소기업진흥법이 폐지(1994. 12. 22 법률제482호)되고 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심의회 기능이 불필요하여 폐지코자 함.

주요골자

-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를 폐지함.

첨 부

-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폐지조례안 1부.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